

「홈페이지제작 지원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화성지역 소공인 사업장의 국내·외 시장 마케팅 및 신규 판로개척을 위한 『홈페이지제작 지원』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20일

화성상공회의소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홈페이지제작 지원 사업
- 사업목적 : 국내·외 시장 마케팅 및 신규 판로개척
- 사업개요
 - (지원규모) 14개사 내외
 - (모집기간) '21. 8. 20(금) ~ 9. 3(금) 17:00까지
 - (신청방법) 팩스 및 이메일 접수, 방문접수
 - (지원대상) 화성시 관내 10인 미만 『C22, C24~C31』소공인
 - ※ 동탄 1동 ~ 8동 대상 제외 (집적지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)
- (지원내용) 홈페이지제작 지원 1개사당 최대 150만원 지원 (VAT 제외)

※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(C22), 1차 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(C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(C27), 전기 장비 제조업(C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

<홈페이지제작 지원 관련 예시>

예시) 센터지원금(1,500,000원) 초과일 경우

공급가액 (A)	부가세 (B)	총 액 (C=A+B)	센터 지원액 (D)	업체 자부담액 (E)
2,000,000원	200,000원	2,200,000원	1,500,000원	700,000원

예시) 센터지원금(1,500,000원) 이내일 경우

공급가액 (A)	부가세 (B)	총 액 (C=A+B)	센터 지원액 (D)	업체 자부담액 (E)
1,350,000원	135,000원	1,485,000원	1,350,000원	135,000원

2 모집안내

□ 모집개요

- (공고기간) 21. 8. 20(금) ~ 9. 3(금) 17:00까지

* 서류보완기간: 21. 9. 7(화) 17:00까지

- (신청방법) 팩스 및 이메일, 방문 접수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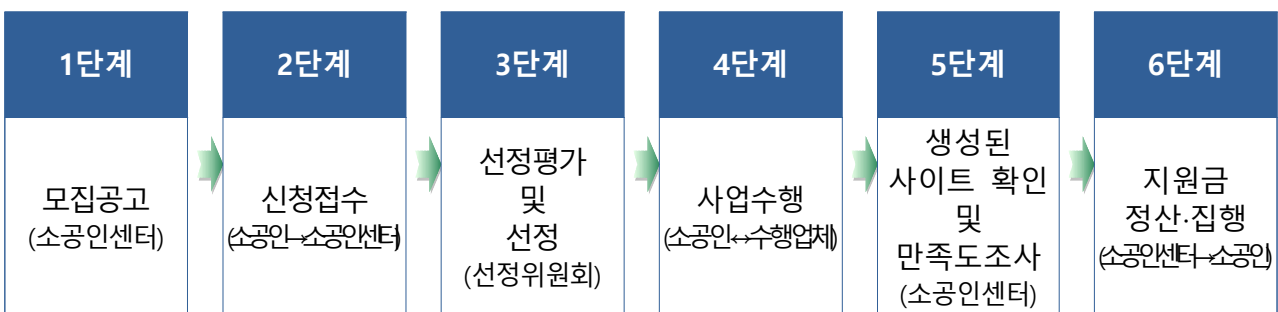
- 제출서류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 및 팩스 송부

* 담당자 이메일 주소 : hsmfsc@gmail.com

* 팩스 : 031-354-3642

* 방문접수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2층 소공인특화지원센터

<사업신청 절차도>



□ 제출서류

순	제출서류	비 고
1	사업신청서 [붙임1] 1부	
2	개인정보 동의서 [붙임2] 1부	
3	사업자등록증 1부	국세청홈택스(국번없이 126) (https://www.hometax.go.kr)
4	중소기업확인서 1부 (소상공인확인서-소상공인 명시 必)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://sminfo.smba.go.kr) (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)
5	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*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	국세청홈택스(국번없이 126) 정부24(1588-2188)
6	주업증명(업종코드) 조회 화면 인쇄본(서명 필수) 1부 * 로그인>MY홈택스>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> 주업증명(업종코드) 조회 후 인감 또는 자필서명날인	국세청홈택스(국번없이 126) (www.hometax.go.kr) / (로그인 必)
7	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부	* 화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고 ‘중요! 소상공인주업종 확인 서류 준비 매뉴얼’
8	지원사업 대상선정 평가기준표[붙임3] 1부	* 평가 항목별 체크 사항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평가점수 인정
9	홈페이지제작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	* 홈페이지 제작 준수사항 토대로 동일 항목 견적만 인정. * 제작업체 직인 날인 * 견적금액은 시장가격이어야함 터무니없는 견적금액 반려처리됨 * 화성시 관내 홈페이지 제작업체일것

* 홈페이지 제작시 준수사항

- ① 최소 페이지 수는 8페이지 이상(메인페이지, 회사소개 등)
- ② 모바일(스마트폰)에서도 호환 가능하도록 제작
- ③ 도메인, 호스팅 관리 및 보수 2년간 무상 제공
- ④ 독립형 홈페이지로 제작하여 도메인, 호스팅은 소상공인 소유
- ⑤ 간단한 텍스트 및 게시판 수정 등 쉬운 작업은 소상공인이 직접
관리 가능하도록 제작

3

세부추진절차

신청서 제출 (팩스·메일·방문접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집기간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대상자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정결과 개별 문자 통보 홈페이지제작 지원 사업 서약서[붙임4] 제출
사업설명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정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및 지원금 신청 서류 작성 안내
홈페이지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저비용 업체 선정) 제출한 견적서 중 저비용 업체로 제작업체 선정 홈페이지 제작 서약서[붙임4] 운영지침 준수사항에 의거 진행 * 세부 제작 사양은 진행단계에서 변경 가능하며 소공인 업체와 홈페이지 제작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가능.
지원금 신청서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인 날인 하여 방문 제출만 가능
홈페이지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센터 담당자가 홈페이지 사이트 확인(PC버전, 모바일 버전)
지원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홈페이지 제작업체로 지원금 지급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

4

평가 및 선정안내

평가절차

- 서류검토(보완요청) → 선정평가 → 결과통보

평가방법

- (서류검토)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
 - *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로 간주
- (선정평가)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 기준표[붙임3]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

선정통보

- 신청서 접수후 14일 이내 개별 문자 통보

5

사업 수행

- 홈페이지 제작
 -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이메일 혹은 팩스로 서류 제출
 - 홈페이지제작 지원 사업 서약서[붙임4]

6

지원금 지급 신청

-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기한
 - 21. 10. 4(월) ~ 10. 22(금) 17:00까지 방문 제출
 - * 기한내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**제출 기한을 엄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지원금 지급 신청 제출서류

순	제출서류	비 고
1	지원금 지급 신청서[붙임5] 1부	* 직인 날인, 서명불가.
2	제작된 홈페이지 컴퓨터 파일	* 담당자 메일 송부
3	완료보고서[붙임6] 1부	* 홈페이지 주소 및 화면 캡처본
4	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원본 각 1부	* 제작업체 직인 날인
5	전자세금계산서 1부	*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.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
6	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	
7	제작업체 통장 사본	
8	자부담금(부가세포함) 입금확인서 1부	*필수 확인 사항 ① 소공인업체 대표자명 혹은 업체명 ② 소공인업체 계좌번호 ③ 홈페이지 제작업체 대표자명 혹은 업체명 ④ 홈페이지 제작업체 계좌번호
9	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사본 1부	

Q. 주업종명(업종코드)조회 화면 인쇄본은 어디서 확인가능 한가요?

⇒ 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> 새소식 > 소공인특화지원센터 > 공지사항 [중요] 소공인 주업종 확인 서류 준비 매뉴얼 을 확인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. 사업장이 동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사업 신청이 불가능한가요?

⇒ 네, 그렇습니다. 사업장 주소가 동탄 1동~8동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 해당 업체의 경우 동탄특화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Q. 제작업체는 반드시 화성시 관내 업체여야만 하나요?

⇒ 본 지원사업은 화성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.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바, 화성시 관내 경제 유동성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자 하오니 화성시 관내 홈페이지 제작 업체로 선정 부탁드립니다.

Q. 홈페이지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?

⇒ 메인페이지, 회사 소개, 제품 소개, 공지사항, 오시는 길 등을 포함하여 8page 이상 제작해 주셔야 하며, 세부 제작 사양은 소공인 업체와 홈페이지 제작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.

Q. 견적서 상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?

⇒ 견적서(비교견적서) 제출 시 견적일(사업모집기간 내), 공급받는 업체(사업 신청 업체), 공급하는 업체(업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업태, 종목, 주소 및 **직인**) 그리고 견적내용(항목, 세부 내용, 금액 등)이 들어가야 합니다. 원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가 상호 가격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.

Q. 제출서류 중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양식은?

⇒ 홈페이지 제작사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
Q. 제출서류 중 홈페이지 제작파일은 어떻게 제출하나요?

⇒ 홈페이지 제작시 생성된 소스 파일로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. 지원금입금은 언제 되나요?

⇒ 지원금 신청서 제출 마감 후 30일 이내 홈페이지 제작 업체로 입금처리됩니다.

유의사항

- ①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,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소공인센터 사업에 지원이 불가 합니다.
- ② 선정업체는 해당 사업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사업기간이 지난 이후 지원금 지급 불가이오니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,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④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
※ 참고 : [화성상공회의소] <http://hwaseongcci.korcham.net>

[소공인특화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] http://pf.kakao.com/_xgxgXeK (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링크)
휴대폰 카카오톡 실행-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 터치-화성상공회의소 검색-친구추가 터치

8

문의처

담당자 : 한지원 매니저 031-354-3641 (hsmfsc@gmail.com)